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21. 8. 31.>

건설업등록 등의 수수료액(제38조제1항관련)

신청내용	수수료
1. 건설업등록	
가. 토목공사업·건축공사업·조경공사업	6만원
나. 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9만원
다. 전문공사업(가스난방공사업은 제외한다)	2만원
라. 가스난방공사업	1만원
2.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의 재발급(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란이 부족하여 재발급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2천원
3. 건설업분쟁조종	5만원